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명계수하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5. 08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2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경락대금대출(선박담보) 채권보전 부적정

○ 경락대금대출을 실행하며 채권보전 조치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담보물의 어업허가권이 상실되었음.

< 관련법규 >

○ 「상호금융 여신규정(예)」제14조(사후관리)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260조(담보물의 변경), 제4편 제1조(관리원칙)

○ 「인장관리규정(예)」제2조(정의), 제8조(사용요령)